



**또우화**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51282 ] [홈페이지 주소]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5.10.24 ] www.sbwell.co.kr/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6.01.29.] [대표 이메일주소]  
nick@sbwell.co.kr

## 또우화

### 정 보 공 개 서

[(주)에스비웰]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에스비웰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 B동 1909호]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031-286-3288]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31-630-3988]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31-286-3288]

##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4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7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8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5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29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30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32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34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 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에스비웰	또우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 B동 1909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1.09.28.	2021.09.28.	황선	031-286-3288	031-630-3988
	법인등록번호	134511-0539542	사업자등록번호	474-87-02461	

###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사용인 (임원)	황선(대표이사)	또우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 B동 1909호		
	방하빈(이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방하준(이사)		황선	031-286-3288	031-630-3988
	한동길(감사)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회사와 인수·합병을 하였거나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된 사실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또우화]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또우화	대만식 디저트를 취급하는 카페입니다.
상 호	또우화 0 0 점	당사는 보통 해당지역 명을 사용하여 가맹점 상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상표 출원번호 제 40-2023-0211799호 상표 등록번호 제 40-2300113호
		상표 출원번호 제 40-2024-0009277호 상표 등록번호 제 40-2359754호
		상표 출원번호 제 40-2023-0211801호 상표 등록번호 제 40-2362077호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1,071,331	827,357	243,974	763,786	141,939	115,107
2023년	1,566,058	1,197,278	368,779	777,749	176,859	124,805
2024년	1,838,284	1,615,196	223,088	528,683	-49,538	-145,691

그 근거는 [별첨 1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또우화 이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상기 1)의 자료와 같습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황선	대표이사	2022.02. ~ 현재	(주)에스비웰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방하빈	이사	2024.09. ~ 현재	(주)에스비웰 이사	경영지원
	방하준	이사	2024.09. ~ 현재	(주)에스비웰 이사	경영지원
	한동길	감사	2024.03. ~ 현재	(주)에스비웰 감사	감사 업무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3	7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본 가맹사업 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명	기간	사업내용
해당없음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b>도우화</b>	상호, 서비스표 등	2025.01.10.	출원번호 제 40-2023-0211799호 등록번호 제 40-2300113호	(주)에스비웰	2035.01.10.
 <b>두화</b>	상호, 서비스표 등	2025.05.15.	출원번호 제 40-2024-0009277호 등록번호 제 40-2359754호	(주)에스비웰	2035.05.15.
 <b>또화</b>	상호, 서비스표 등	2025.05.21.	출원번호 제 40-2023-0211801호 등록번호 제 40-2362077호	(주)에스비웰	2035.05.21.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I. 가맹본부의 [또우화] 가맹사업 현황

###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개시 예정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24년 3월 8일)

### 2. [또우화]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에스비웰	또우화	황선	가맹사업 미개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 B동 1909호

### 3. [또우화] 업종

영업표지	업종	
또우화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 외국식	대만식 디저트, 커피, 음료 등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또우화]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	-	1	-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	-	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당사는 25년 신규 가맹본부로서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5. 바로 전 3년간 [또우화]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					
2023	-					
2024	-					

당사는 25년 신규 가맹본부로서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6. [또우화]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업종	영업포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가맹점 및 직영점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해당없음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또우화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바로 전 사업연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m <sup>2</sup> 당	하한	면적 3.3m <sup>2</sup> 당	
전체	해당없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당사는 25년 신규 가맹본부로서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수	평균 영업기간
2024년	해당없음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또우화]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9. 광고 및 판촉활동[27]쪽을 참고하십시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1,893	 (비공개)		
광고	소계	 (비공개)	1,893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판촉	소계	 (비공개)				
	 (비공개)					

상기 금액에는 또우화 가맹사업 외 광고·판촉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주소	전화번호
IBK기업은행	인터넷뱅킹	-	1566-2566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기업은행에 계약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기업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한 뒤 인터넷뱅킹 내 IBK안심이체를 통해 거래대금을 이체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 서비스를 이용 중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해당없음	
보험계약자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해당 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해당 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 해당 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또우화]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금액(천원, 부가세포함)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33,000]				
가맹비	22,000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시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일회성 비용
교육비	5,5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전 계약 해지시	교육 개시 이후 반환 불가	일회성 비용
개점행사비	5,500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시	개점행사를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b>협력업체</b> 광고, 현 수막, POP, 쿠폰, 시식샘플

2) 계약이행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천원, 부가세없음)	지급 기한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10,000]			
(현금)보증금	10,000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계약 종료시 반환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43,000]
가맹비	22,000
교육비	5,500
개점행사비	5,500
(현금)보증금	10,000(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자세한 내역은 <별첨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65,760]				15평(49.59㎡) 기준
인테리어	협력업체(미정)	37,125	2,475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공사 전 계약 취소	
간판 및 사인물	협력업체(미정)	5,500	-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설치 전 계약취소	
주방집기 및 기기	협력업체(미정)	16,500	1,100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설치 전 계약취소	<별첨2> 참조
초도물품	가맹본부	3,300	-	개점 7일 전	설치 전 계약취소	<별첨2> 참조
POS	<b>협력업체</b>	1,155	-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설치 전 계약취소	구매 시 비용
KIOSK	<b>협력업체</b>	1,980	-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설치 전 계약취소	구매 시 비용
POS, KIOSK 설치비용	<b>협력업체</b>	200	-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설치 전 계약취소	임대 시 비용 (구매 시 지원)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가맹본부	-	-	개점 7일 전	설치 전 계약취소	

위 표의 금액은 15평(49.59㎡)을 기준으로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실측 및 설계도면 제공비 일금이백이십만원정(₩2,200,000, 부가세 포함)과 공사감리비로 3.3㎡당 일금삼십삼만원정(₩330,000, 부가세 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	<p>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p> <p>※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p>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② 만 19세 이상일 것 ③ 기타 관련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9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또우화]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가맹금 분할 납부

당사는 가맹금을 일시불로 납부받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9. 광고 및 판촉활동[27]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8,927]				
로열티	가맹본부	하단 표 참조	익월 5일까지	-	소멸성 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 표시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부담액	광고 실시 전	광고 시행 전	광고 시행 후	V.9. 광고 및 판촉활동 참조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판촉행사 별로 별도 공지	-	-	
교육훈련비	당사	5,500	교육 실시 2주일 이전	교육 미실시	소멸성 비용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점사업자 자율 선정	3,300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공사 전 계약 취소	-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6%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POS 사용료	<b>협력업체</b>	44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사용된 비용	임대 시 비용이며, 36개월 기준
KIOSK 사용료	<b>협력업체</b>	77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사용된 비용	임대 시 비용이며, 36개월 기준

\* 로열티 산정표

월 매출 구간(부가세 포함)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비고
1,000만원 이하	550	최소 구간
1,0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770	
1,5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990	
2,00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	1,210	
2,400만원 초과	1,320	최대 상한 적용

## 2) 구입 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 이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환경 및 자재 관리	가맹점사업장의 환경 상태, 자재의 보관 상태 등 감독	분기별 1회	문의: 가맹사업팀
시설 및 설비 관리	가맹점사업자의 정착물을 비롯한 각종 시설, 설비 관리 상태 점검	분기별 1회	
채용관리	적절한 종업원의 채용 여부, 관리, 교육 등 점검	분기별 1회	
재고관리	실제 재고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회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분기별 1회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추가 교육비	협의하여 결정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추가교육 필요시
점포 이전비	협의하여 부담	점포 이전 후 10일 이내	점포 이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	점포이전 합의시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당사가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양수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또우화]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은 개점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당사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5,500]
양도교육비	5,500
(현금)보증금	10,000(부가세 없음)

양수인은 상기 비용 이외에 행정비용 등 가맹점운영권을 양도·양수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며,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7.2)가맹점운영권의 양도[25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면, 귀하는 본 계약에 정하는 가맹점의 운영권을 상실하며, 당사와 귀하는 즉시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상회복 및 정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의 종료에 대해 귀책 사유가 있는 계약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① 귀하는 본 계약 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또우화』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이와 동시에 당사의 상표·상호·로고·휘장 등의 영업표지, 기타 등기·등록된 권리, 영업비밀, 노하우 등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는 당사에게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전산 및 회원 관리 프로그램 등을 반환하고, 『또우화』 가맹점임을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위약금을 부과하고,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당사의 상표 · 상호 등의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할 경우 형사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귀하가 제2항 규정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소요된 위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귀하가 본 계약 해지 또는 만료 당시 당사에게 공급받은 물품은 당사와 귀하의 합의하에 물품의 상태를 감안하여 적정가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 ⑤ 당사와 귀하는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또우화]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단위 : 원)		구분
		상한	하한	
1	해당없음			
2				

2) 특수 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또우화]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 없음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또우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 없음					

2) 당사가 [또우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 없음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별첨3>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상품·용역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상품 및 용역 등을 고객 판매 용도 외에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프로그램)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3> 참조	<별첨3> 참조	홈페이지에 공지	2025년 9월 기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두유 및 콩 베이스 디저트/음료 전문점	또우화	해당없음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행정구역의 구조 및 지역별 상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영업지역을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단, 거리의 측정은 GPS 지도를 기반으로 직선 거리를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도보, 운행거리 및 행정경계 기준을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구분	설정 기준	설정방법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 지역</p> <p>(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내 지역, 인구 10만명 이상인 단위 지역 중 상권 밀집도가 높은 지역)</p>	<p>각 시·구 또는 행정동 단위로 1개 매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매장 중심을 기준으로 직선반경 1.5km</p> <p>(단,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이거나, 8차선 이상의 도로, 하천, 철도 등으로 상권이 명확히 분리되거나, 2개 이상의 독립 상권(오피스지역, 대학가, 쇼핑몰 등)이 존재하거나, 특수상권(대형 쇼핑몰, 역사, 터미널 등)에 해당하거나, 기타 본사에서 기존 매장과 상권 충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출점 가능</p>	<p>계약서 명시 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 별첨에 지도로 표시</p>
<p style="text-align: center;">비도시 지역</p> <p>(도 단위 군, 읍·면 지역, 인구 10만명 미만인 지역, 상권 밀도가 낮고 분산되어 있는 중소도시)</p>	<p>각 읍·면 또는 군 단위로 1개 매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매장 중심을 기준으로 직선반경 5~10km</p> <p>(단, 독립소비유입상권(관광지, 리조트, IC, 전통시장 등)이 존재하거나, 지형적 요인(산, 강, 도로 등)으로 상권 간섭이 제한되거나, 기타 본사에서 상권 중복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매장과 거리, 상권의 중복 여부,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외적으로 출점할 수 있다.)</p>	<p>계약서 명시 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 별첨에 지도로 표시</p>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포우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

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0	100	-	-

당사는 25년 신규 가맹본부로서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당사는 25년 신규 가맹본부로서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또우화]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연장하는 기간은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6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4.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5. [또우화]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6.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귀하가 관련 법령에 의한 설립요건, 점포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보유, 기타 사업을 위한 인적, 물적 요건을 불비하거나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구비한 경우	제21조	제29조, 제37조
2. 로열티 등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한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경우	제15조	
3. 귀하가 당사의 개점 승인 서류 판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제16조	
4. 영업개시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6조	
5. 귀하가 당사의 가맹점 운영에 대한 시정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태한 경우	제19조, 제20조	
6. 가맹점 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24조	
7. 귀하가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점매입하는 경우	제27조	
8.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제34조	
9.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39조	
10. 귀하가 본 가맹사업과 동종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사업의 영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를 제휴한 경우	제40조	
11. 고의 또는 과실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당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	
12.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당사에게 해지권이 유보하거나,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7조 제3항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	

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위 즉시해지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본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정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서의 내용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 수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2개월 전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1.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2. 양수인이 신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하게 소정의 교육, 훈련을 이수하고, 그 비용을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사업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로열티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지므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가맹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 가맹본부의 상속 승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중 국내 전 지역 내에서 귀하가 [또우화]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업금지 되는 업종	영업허가 절차	비고
두유 및 콩 베이스 디저트/음료 전문점	해당 없음	문의: 가맹사업팀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또우화]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시 ~ 20시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 25일 이상 영업	문의: 가맹사업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을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가 지정하여 가맹본부 승인을 받은 자	점주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본부 승인 요건: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를 소지한 자에 한함)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1개월	본사 가맹사업팀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1개월	본사 가맹사업팀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캠퍼스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1개월	본사 가맹사업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전체행사로서의 [또우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50%	50%	광고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전국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모 집광고	75%	25%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판촉행사	할인/증정 행사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에 따른 동의 절차(약정 체계를 포함한다) 시 행사별 부담비율 통지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행사 종료 후 최종 부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서 영업표지의 통일성 및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

며,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귀하가 지역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광고, 선전의 소재와 계획에 대해서는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귀하 또는 당사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가맹계약서 상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벌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손해배상 및 위약벌	관련 계약조문
1. 비밀유지의무 또는 경업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일금삼천만원정(₩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42조
2. 귀하가 구입강제품목을 당사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구입하여 사용하지 않고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별도의 거래처를 통하여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일금일천만원정(₩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정 전까지 적발 익일부터 위약금으로 하루당 일금일십만원정(₩100,000)씩 당사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3. 귀하가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당사가 지정하는 사양을 만족하지 않는 품목을 구입 또는 사용하거나, 지정된 메뉴 이외의 메뉴를 판매할 경우 적발 즉시 위약벌로 일금일천만원정(₩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정 전까지 적발 익일부터 위약금으로 하루당 일금이십만원정(₩200,000)씩 당사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4. 귀하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일금삼천만원정(₩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맹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가맹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경우, 귀하는 위약벌로 계약기간의 잔여 일수에 일금삼만원정(₩30,000)을 곱한 금액을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p>6.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가 계약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귀하는 계약종료 익일 부터 위약별로 하루당 일금삼십만원정(W300,000)씩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p>	
<p>7. 귀하의 위법행위 또는 온·오프라인 상의 각종 매체를 통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사 또는 당사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귀하는 위약별로 일금오백만원정(W5,000,000)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p>	
<p>8.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이를 배상 합니다.</p>	
<p>9. 위에서 정한 위약별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9P~10P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29	
가맹금 예치	-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체결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최초상품공급	- 초도물품 지급	D-2~1(2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 가능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판교체 비용</li> <li>○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li> <li>○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가능)</li> <li>○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li> </ul> <p>&lt;분할지급 시 절차&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li> </ul>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인력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해당없음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없음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또우화]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4>를 참조하십시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개점전)	영업 및 운영 노하우, 고객 응대, 관리 프로그램 등	이론/실습교육 및 현장실습	가맹점 개점 전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점주 및 직원 운영, 친절교육	이론/실습교육 및 현장실습	필요시 교육 14일 전 상호조율	필요시, 또는 점주 요청시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또우화]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4>를 참조하십시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비고
신규 교육	7일간 진행, 1일 6~8시간	5,500	최초 계약 시 필수적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 인원은 최대 2명까지로 함
보수 교육	필요시 교육 14일 전 통지	필요시 교육 14일 전 통지	-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피고용인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가맹점 개점 전까지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6조에 따라 가맹점 개점 승인을 보류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또우화 본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갈곡로7번길 3, 1층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약 10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60,838	POS상 매출액이며, 6개월 이상 1년 미만 운영한 직영점에 대하여는 연 환산 금액임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031-286-3288)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tovecare.com]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2> : 물품 구입 및 입차 현황

1. 원·부재료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기기 및 설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3> : 메뉴 및 권장가격

## 또우화

- 또우화**  
토핑 선택가능  
5.0
- 또우화 A**  
토핑: 녹두+흑미+팥  
• 기본: 7.8  
• small: 5.8
- 또우화 B**  
토핑: 호랑이콩+녹두+흑미  
• 기본: 7.8  
• small: 5.8
- 또우화 C**  
토핑: 녹두+팥+치자QQ  
• 기본: 7.8  
• small: 5.8
- 또우화 D**  
토핑: 치자QQ+팥+호랑이콩  
• 기본: 7.8  
• small: 5.8
- 또우화 E**  
토핑: 팥+팥+치자QQ  
• 기본: 7.8  
• small: 5.8

★ 메뉴 선택 후 아래 국물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

● 시원한 옥당   
 ● 시원한 두유   
 ● 따뜻한 두유

## 토핑추가

 <b>녹두</b> 1.5	 <b>팥</b> 1.5	 <b>찰흑미</b> 1.5
 <b>호랑이콩</b> 1.5	 <b>치자QQ</b> 1.0	 <b>팥</b> 1.5
 <b>인절미</b> 1.5	 <b>꽃떡</b> 1.5	 <b>흑당시럽</b> 1.0

"치자QQ는 대만식 젤리류 토핑입니다.  
매일 한정수량만 생산하며  
이곳에서만 드실 수 있는 토핑입니다."

## 스페셜 메뉴

 ICE <b>또화푸딩</b> 6.5	 HOT <b>또우화 + 대만과배기 세트</b> 5.5
 ICE <b>두유팥빙수</b> 7.8	 ICE <b>또화빙수</b> 토핑: 팥 + 팥 + 치자QQ 10.0

## 스페셜 메뉴

 <b>애플망고푸딩</b> 5.0	 <b>연유팥푸딩</b> 5.0	 <b>대만과배기</b> 3.0
 HOT <b>떡두유</b> 6.5		 HOT <b>대만팥탕</b> 6.8

## TAKE OUT

 ICE <b>미니 또우화 푸딩</b> 3.5	 ICE <b>팥두유 350ml</b> 3.0	 ICE <b>순두유 500ml</b> 3.0	 ICE <b>달콤두유 500ml</b> 3.5
---	---	---	--

## 버블티



ICE  
또우화 흑당버블티  
5.8



ICE  
팥 흑당버블티  
5.8



ICE  
흑당버블티  
4.8

## 수제 에이드



ICE  
레몬  
5.8



ICE  
자몽  
5.8



ICE  
오렌지  
5.8



ICE  
애플망고  
5.8



ICE  
딸기  
5.8

## 음료



ICE  
흑당커피  
그라니따  
4.8



ICE  
레몬흑당  
그라니따  
4.8



ICE  
아이스티  
4.5



HOT/ICE  
레몬통과차  
Hot: 4.5  
Ice: 4.8



HOT/ICE  
순두유  
4.0



HOT/ICE  
팥두유  
4.5



HOT/ICE  
두유홍차  
4.5



HOT/ICE  
팥두유홍차  
5.0



HOT/ICE  
유기농  
대만 허브차  
4.0



HOT/ICE  
애플시나몬티  
5.5



HOT/ICE  
애플시나몬 블랙티  
5.8



HOT/ICE  
애플시나몬 소이라떼  
5.5

## 프리미엄 핸드드립 커피

### Ice



핸드드립 아이스커피  
4.5



핸드드립 디카페인 아이스커피  
5.0

### Hot [고소]



콜롬비아  
MEDIUM DARK ROAST  
4.5



페루  
MEDIUM DARK ROAST  
4.5



디카페인 콜롬비아  
MEDIUM ROAST  
5.0



에티오피아  
DARK ROAST  
5.0

### Hot [상큼]



브라질  
LIGHT ROAST  
4.5

<별첨4> : 또우화 가맹점 교육 프로그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5>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에 점포를 개설하고자하는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가맹점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제공일: 20   년   월   일

<별첨6>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 가맹희망자 보관용	
<h2 style="margin: 0;">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h2>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 상호	
브랜드명	
<h3 style="margin: 0;">가맹희망자</h3> <p style="margin: 0;">(※ 모든 빈칸은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p>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② 주소	
③ 전화번호	
④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 제공 받은 시간까지 작성(24시 형태로), 예)오후 2시면 14시로 기재
⑤ 제공받은 장소	※ 구체적으로 작성 (가맹본부 사무실, OO가맹점 내, 서울시 강남구 소재 OO커피숍 내)
⑥ 수령확인문구	상기 가맹희망자 본인은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문서를 정히 ( <i>수령 하 였 음</i> )
	※ “수령하였음” 이라고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기재
가맹본부 제공 담당자	
제공자명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주의사항 : 가맹본부 담당자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제공하고 ① ~ ⑥의 각 빈칸이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v.2017.09	

